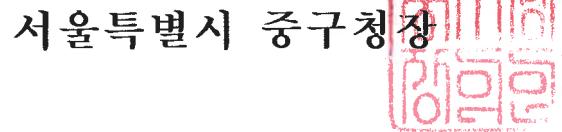
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
· 규칙심의회,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
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
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
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
입법 예고합니다.

2022년 10월 11일



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「치매관리법」 개정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업무 내용 현행화 및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
위해 「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“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”을 “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”으로
변경하여 조문내용 명확화 (안 제1조)
- 나. 치매관리법 제17조 개정에 따라 업무내용에 “장기요양인정신청의 대리, 성년후견제
이용지원사업, 치매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” 추가(안 제3조제7호~제9호)

다. “재위탁 할 수 있다”를 “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수 있다”로 변경하여 재위탁, 재계약 용어구분 (안 제4조제3항)

라. 준용 근거법령을 “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”에서 “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”으로 변경(안 제10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(참조: 시민건강과, 주소: 서울특별시 다산로39길 16(무학동), 문의전화: 02-3396-6373, FAX: 02-3396-8890, 메일: nudskal2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붙임 1.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1부.
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의 “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”을 “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”으로 한다.

제3조(업무) 제7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
8. 「치매관리법」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
9.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

제4조(운영의 위탁) 제3항 중 “재위탁 할 수 있다”를 “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10조(준용)의 “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”을 “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·구 조문 대비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치매관리법」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치매안심 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----- -----.</p>
<p>제3조(업무) 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7.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</p>	<p>제3조(업무) ----- ----- 1.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8. 「치매관리법」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9.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10.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</p>
<p>제4조(운영의 위탁)</p> <p>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이하 ‘구청장’이라 한다)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치매 관련 전문 의료기관, 보건의료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</p>	<p>제4조(운영의 위탁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

<p>리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, 재위탁 할 수 있다.</p>	<p>③ ----- -----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수 있다.</p>
<p>제10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「치매관리법」, 「서울특 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」 등을 준 용한다.</p>	<p>제10조(준용) ----- ----- 「서울특 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 -----</p>